

# 2021학년도 후기(정시) 한남대학교 대학원 합격자 유의사항

##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합격자 발표: 2021. 6. 30(수) 14:00 이후 대학원 홈페이지(gra.hannam.ac.kr)에 공지  
(개별 통보 없음)

나. 등록방법

- (1) 고지서 출력: **2021. 7. 19(월) 10:00 이후** 대학원 홈페이지(gra.hannam.ac.kr)에서 출력  
※ 합격자 조회 > 합격자 발표화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 등록기간: **2021 7. 20(화) 09:00 ~ 7. 22(목) 17:00 [3일간]** / KB국민은행 전 지점
- (3) 등록방법: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해당 '등록금'을 입금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등록금 납부(은행 창구에서 수납)
- (4) **합격자가 등록 마감일인 7. 22(목)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함**

## 2. 장학금 신청

- 신입생 합격자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①장학금 신청서(붙임1)와 ②재직증명서(2021. 6. 28 이후 발급, 해당자에 한함) 및 기타 제출서류를 7월 7일(수) 15: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 해당 기간 내 제출하여야 등록금 납부 시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학비감면이 반영됨
- ※ 장학금 명칭 및 감면률(수업료에서 감면)

장학금 명칭	감면률	대상
공무원 장학금	40%	· 국가공무원, 군인, 경찰 등
공공기관 장학금	30%	· 공공기관 근무자 및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및 직원
언론인 장학금	70%	· 언론인(대전·충청지역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PD협회에 등록된 자)
교사(원) 장학금	50%	·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소지자로 현직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1급), 현직 초·중등교원(기간제교사 포함), 국(공)·사립대학교(전문대학 포함) 교원 및 교직원(조교 포함)
전문직 장학금	30%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목회자 장학금	30%	· 목사 및 전도사, 신부
동문 장학금	35%	· 한남대 학부 및 석사과정 졸업생
가족 장학금	25%	· 형제·자매·부모 등 2인 이상이 재학 중일 때 1인에게 지급
가족회사임직원 장학금	25~40%	· 본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된 기업의 임직원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장학금	50%	· 한남대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가족인 학생
다니엘 장학금	100%	· 본교 학부 다니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외국인 장학금	60%	· 외국인 학생 입학 첫 학기에 한함(입학 후 직전학기 성적 4.0이상 60%, 3.5이상 50%, 3.0이상 30%, 3.0미만 없음)

(관련문의는 학과 사무실 또는 대학원 교학팀 042-629-8123)

※ 입학금 및 수업료(2021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인문/사회	이학/체육	공학/예능
716,300원	3,668,650원	4,452,200원	4,843,800원

### 3.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련 안내

- 가. 국내체류자: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연장 및 변경 관련 붙임문서 참조(붙임2)  
※ 학기 개시일 이후 체류자격변경 및 비자연장 신청 시 벌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 국외체류자: 표준입학허가서 및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 입학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사본 발송, 원본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교학팀으로 요청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 042-629-8123, 이메일 [hnugra@hnu.kr](mailto:hnugra@hnu.kr))

###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 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나. 일정
-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1. 8. 25(수) 14:00 예정
  - (2) 2021-2학기 수강신청: 2021. 8. 16(월) ~ 8. 20(금)
  - (3) 2021-2학기 개강일: 2021. 9 1(수)

### 5. 등록포기 및 환불

- 가. 개강전까지 등록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함
- 나. 개강일부터 30일 이내 자퇴할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함  
(단, 입학금은 개강일 이후 미반환)
- 다. 환불신청 제출서류: 등록금 환불신청서(소정 양식)

-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연장·자격변경 안내 1부

2021. 6.

(붙임1)

# 대학원 장학생 추천서(2020학번 이후)

2021학년도 2학기 \_\_\_\_\_ 장학금 장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성명		학과		학번	없음
과정		연락처(핸드폰/자택)			
직장명(재직자만 해당)			직위(직급)		
장학금 해당항목(택 1, 'v'표)		추가 제출서류		비고	
공무원[40%감면]		재직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군인 포함	
공공기관 재직자[30%감면]		재직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목회자[30%감면]		재직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전문직[30%감면]		재직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가족회사임직원[25~40%]		재직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본교와 협약 체결한 기업에 한함	
교사(원)[50%감면]		재직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및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자격증)사본			
언론기자[70%감면]		재직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PD협회 회원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장학금[50%]		가족관계증명서[2021.06.28일 이후 발행본]			
가족장학금[25%감면]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및 본인이 2021-2학기 재학예정인 경우만 해당 → 2021. 9. 1. 이후 가족 및 본인의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외국인장학금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직전 학기 성적 4.0이상 60%, 3.5이상 50%, 3.0이상 30%, 3.0미만 없음	
동문장학금[35%감면]		장학생 추천서만 제출			
다니엘장학금[100%감면]		다니엘장학생 증서 사본			

붙임: 재직증명서(원본) 및 기타제출 서류 각 1부. 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학적정보(과정, 학과, 학번), 연락처	장학 업무 처리	10년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생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21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학과 주임교수 \_\_\_\_\_ (인)

## 대학원장 귀하

# 한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연장·자격변경 안내

기본서류	체류자격변경 (D4 → D2 or D10→D2 / 연수 → 학부·대학원 or 구직→학부·대학원)	체류기간연장 (D-2 연장)
① 여권사본 ② 외국인 등록증 ③ 통합신청서 ④ 등록금 납입증명서 ⑤ 성적증명서 ⑥ 재학증명서 ⑦ 체류지 증명서 → 현재 체류 중인 주소와 외국인 등록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계약서 제출. ⑧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취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입학허가서</li> <li>■ 최종학력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 중국 인의 경우 중국 교육부 발급 학력인증서 제출                              → 중국 이외 국가 아포스타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제출</li> <li>■ 한국어연수과정 성적증명서, 수수료증                              ※ 출석률 70% 미만, 성적 70점 미만 : 사유서 작성 후 첨부 (출석률과 성적이 안 좋을 경우 비자기간 6개월 부여)</li> <li>■ 은행잔고증명서 (학생본인 이름으로 발급할 것)                              → 국내 통장으로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2,200만원 이상 잔고증명서 (18000달러 이상, 한남대 한국어교육원 재학 경우 1,100만원 이상 필요)</li> <li>■ 연장 수수료 및 등록증 재발급 비용 130,000원(현금)</li> </ul>	※ 성적 2.0이상 기본 서류 제출 성적 2.0 미달 및 추가 학기 경우 추가 서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잔고증명서 (학생본인 이름으로 발급할 것)                              → 국내 통장으로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1,100만원이상 잔고증명서 (9000달러 이상)</li> <li>■ 자필로 작성한 사유서 첨부</li> <li>■ 수수료 60,000원                              지속적인 성적저조자의 경우, 연장 제한</li> </ul>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여권 ■ 여권사진 1매 ■ 통합신청서 (국제교류팀 비치) ■ 재학증명서 ■ 수수료 30,000원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기숙사/집 계약서)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시간제 취업확인서(대학작성) ■ 시간제 취업확인서(고용주작성)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사업자등록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학사1,2학년 토픽 3급, 학사3학년 이상 및 석·박사 토픽4급(영어 수업 과정인 이를 입증하는 서류)
-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 학기 중 : 월-금 주당 25시간 이내, 주말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 반드시 활동 시작 최소 1주일 전 출입국 사무소 방문 후 신고 진행 ! 상황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할 수 있음

## 석사, 박사과정 수료생 비자연장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수수료증명서 ■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논문지도비 납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1,100만원 이상 국내 본인명의 통장계좌로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

## 국제교류팀 비자 업무 처리 시간 안내

- 비자 자격 변경 기간 : 2021. 8. 9(월) - 8. 25(수) 15시까지
- 재학생 비자 기간 연장 신청 : 2021. 8. 23(월) - 9. 10(금) 15시까지
- 담당자 : 국제교류팀 중화권 담당 연의 (042-629-8514)

##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

※ 붙임 : 외국인유학생 보험 관련 안내문 1부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2019년 7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있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D2, D4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유학생(체류자격 D2, D4) 건강보험 당연가입

구분	2021년3월1일 D2, D4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국내 체류 재학생)	2021년3월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		
		(국외 체류 재학생)	(국외 체류 신입생·복학생)	(국외 체류 신입생)
가입시기	2021년3월1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 등록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D2,D4로 부여받은 날 (외국인 등록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가입절차	<b>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b>			
고지서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			
보험료	3월~12월 43,490원 (3.1일 취득자)			
납부기한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가상계좌,은행,전자수납,공단지사(신용카드)징수포털 등 납부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체납	1.보험급여제한: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2.비자연장 등 제한: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3.체납처분: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자격상실	1.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2.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3.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일.다만.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Inquiry: NHIS Customer Service(1577-1000) Service in foreign languages(English, Chinese, Vietnamese, Uzbek 033-811-2000)

☐ Reference: (한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English)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10m01.do>

(Chinese)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20m01.do> (Uzbek)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40m01.do>

(Vietnamese)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50m01.do>